

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

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1.0퍼센트”를 “1.3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1.5퍼센트”를 “1.8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1.8퍼센트”를 “2.1퍼센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.

1.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
2.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을 포함

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

가.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

구 분	1개월 이내	1개월초과 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
82.07.23. ~ 85.12.31.	0%	1.8%	3%	6%
86.01.01. ~ 92.07.12.	0%	2.5%	5%	8%
92.07.13. ~ 02.10.28.	0%	2.5%	5%	10%
02.10.29. ~ 06.02.23.	0%	2.5%	5%	6%
06.02.24. ~ 12.12.20.	0%	2.5%	3.5%	4.5%
12.12.21. ~ 13.07.21.	0%	2.0%	3.0%	4.0%
13.07.22. ~ 14.09.30.	0%	2.0%	2.5%	3.3%
14.10.01. ~ 15.02.28.	0%	2.0%	2.5%	3.0%
15.03.01. ~ 15.06.21.	0%	1.8%	2.3%	2.8%
15.06.22. ~ 15.10.11.	0%	1.5%	2.0%	2.5%
15.10.12. ~ 16.01.03.	0%	1.2%	1.7%	2.2%
16.01.04. ~ 16.08.11.	0%	1.0%	1.5%	2.0%
16.08.12. ~ 22.11.22	0%	1.0%	1.5%	1.8%

*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

나.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: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)</p> <p>①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을 포함한다)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<u>1.0퍼센트</u></p> <p>3.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<u>1.5퍼센트</u></p> <p>4.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<u>1.8퍼센트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1.3퍼센트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1.8퍼센트</u></p> <p>4. ----- ----- <u>2.1퍼센트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